

# 2019년도 제1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22.(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분과위원장 대행), 백대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1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600건(안전번호 제2019-72595호~7576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22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1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했으며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전차 회의록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72595호~75763

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600건임

안전번호 제2019-72595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Feedback (Feat. 녀살)(가수: 보아 (BoA))'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과 가사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 14장을 슬라이드 쇼(slide show)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본 건 음악저작물의 전체분량(3분 19초)을 이용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은 2019. 6. 4. 발매되었는데 게시자는 발매일 다음날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렸고, (심의대상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제시하면서)해당 게시판에는 본 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7259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블로그는 약 4,000개의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블로그에 대해 시정권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2019. 7. 23. 개최, 제2019-121회)에 서는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아닌 게시물,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게시판 또는 사이트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  
원칙적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만 심의에서 검토하되, 사안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게시판 또는 사이트의 성격을 참고하기로 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만 보더라도 음원 발매일 하루 뒤에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은 모델(사진 속 인물은 모두 가수 '보아'로 보임)이 포즈를 취하고 촬영자가 구도를 잡아 촬영한 후 사진의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A 위원 : 해당 심의안건은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인데,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블로그에서 하나의 안건만 요청한지 질의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보호원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한 것인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려움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의 게시판 중 '무엇인 가요'는 'What Is It?'과 'Song of' 의 중의적 표현으로 보임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이전 없이 시정 조치를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고, 오히려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에서 하나의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를 요청한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에서 시정권고 가부에 따라 추가로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72595호는 게시자가 최신 대중가요 한곡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만장일치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72596호~75763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알라딘’ 영화저작물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상영하고 있는 영화저작물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 중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현재 상영 중인 영화 ‘알라딘(Aladdin, 2019)’이 맞고, 한글 자막파일과 함께 제공되고 있음
- B 위원 : ‘알라딘(Aladdin, 2019)’ 영화는 현재 관객 수 1,000만이 넘는 영화로 알고 있음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나머지 안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데드카피이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2596호~75763

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2595호~75763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29.

분과위원장 대행 강상욱

위원 백대용